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이하 법인) 정관에 의하여 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과 정년, 병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교역(실무)을 은퇴하는 가입자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입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선정)

임원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1. 노회를 감안하여 추천하는 이사 10인
2. 연금 운용 또는 유사 직무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자 4인
3. 총회 총무 1인
4.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임원은 가입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호 및 4호의 임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6. 임원은 총회 공찬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단, 노회별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자격 취득과 상실

제3조 (가입대상)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한 지 교회 또는 관계 기관이나 국외에 파송되어 선교와 봉사의 직무에 유급으로 실무하는 교역자와,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으로 한다.

제4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1. 총회 산하 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 등록하여야 한다.
 - 1) 연금 가입 신청서
 - 2) 추천서 (노회장 또는 기관장 발행)
 - 3) 등록카드
 - 4) 주민등록등본
2. 연금 가입자격은 연금가입일 현재 민법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소속 노회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자격이 부여된다.
3. 가입이 허락되어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는 연금 가입 증서를 교부한다.
4. 연금가입자의 자격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의무와 자격 제한)

1. 총회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단, 연금가입 자격이 상실된 자는 예외로 한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신고)

가입자가 시무처 이동이나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와 관계기관이 지체 없이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가입자가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금을 납부치 않을 때에는 연금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2. 타 교단으로 이전하거나 직장을 이전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해 노회나 총회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국적을 상실한 때, 단 해외협력선교동역자 중 총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금액은 제33조 환불금 지불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 (자격의 중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불구, 폐질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사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간접 손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9조 (자격의 회복)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중단되었던 자가 자격회복 허가와 납입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기여금 및 부담금

제10조 (기여금)

기여금이라 함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여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한다.

제11조 (부담금)

부담금이라함은 가입자가 속한 교회 또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담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한다.

제12조 (납입금)

1. 재단은 이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교회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2. 납입금은 제11조의 기여금과 제12조의 부담금으로 하며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제13조 (납입금 할인)

연간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연간 납입할 금액의 100분의 1.5

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14조 (납입금 연체료 부과)

1. 가입자는 제11조 기여금과 제12조 부담금의 당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2. 단 국외에 파송된 가입자(해외협력선교동역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납입금은 당 해연도분에 한하여 당해연도 말일까지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연체이자율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율로 한다.

제15조 (기준 봉급액 책정 및 단계승급)

1. 기준 봉급액의 증감 기준은 이사회가 매년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책정하며 전 년도 통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2. 주 계약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1단계는 기준 봉급액의 50%로 산정한 금액이다.
 - 2) 2단계는 기본단계로, 기준 봉급액의 100%로 산정한 금액이다.
3. 주 계약 가입자가 재직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단계 변경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단계로의 변경을 발한다.
4. 단계변경 신청은 매년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다음 연도 1월분부터 변경한다.

제16조 (납입기간의 제한)

1. 가입자의 납입 기간이 35년이 된 때에는 이후의 납입금을 제한한다.
2. 1항에 의한 납입금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연금지급 계산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4장 재직기간

제17조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본 연금 제도에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까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을 말하며,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사무 교회 이동 등)

사무 교회 (또는 기관)의 이동 또는 휴직, 기타의 사정으로 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미불입된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 혹은 분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불입하여야 할 기여금과 부담금의 액수의 기준은 미불입된 해당연도의 불입액에다 연체 이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미불입 개월 수에 해당되는 기여금과 부담금의 합계 금액과 소정의 연체금을 퇴직 시에 일괄 계산하여 연금 혹은 일시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휴직기간)

병으로 일시 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을 떠나 있을 경우, 또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 및 부담금의 불입이 면제되며 재직 기간에도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소급 불입)

다음의 경우는 소급 불입하여 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1. 가입 후 세칙 제8조 (자격의 중단) 및 제9조 (자격의 회복)의 규정에 따라 불입이 중단되어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그 중단기간에 한하여
2. 1994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중 은퇴 시까지 불입해도 20년이 부족한 자, 199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은퇴 시까지 불입해도 15년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 부족한 기간에 한하여 소급할 수 있으며 목사 안수일까지 소급할 수 있다.
3. 불입금의 산정은 소급불입 대상기간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불입원금에 연체 이율을 가산한 원리금 합계액으로 한다.

제5장 급 여

제21조 (급여의 종류)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재직기간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65세 이상으로 은퇴한 때에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단 199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15년 이상 납입하고 65세 이상 은퇴한 자에게는 20년이 미납되어도 연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2. 퇴직 일시금

1항에 해당되는 가입자가 일시불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

3. 퇴직공제 일시금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초과된 연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

4. 퇴직환급금

재직기간이 5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재직 연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5. 퇴직환급 일시금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재직 연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6. 장애연금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사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때 지급

7. 유족연금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

8. 사망 일시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일시불로 지급

9. 유족 위로금

가입 후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거나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

10.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금 연차 적용

만 70세 이전의 은퇴자에게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차적용표(제35조)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

11. 연금장기수급자 연차 적용

최초 연금지급 후 일정 시기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장기수급자 연차적용표(제 36조)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

제22조 (급여의 신청)

퇴직급여 청구 시 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로 신청해야 한다.

- 1) 급여(연금) 지급 신청서
- 2) 퇴직증명서(노회장 또는 기관장 발행)
-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발행)
- 4) 노회 회의록 사본
- 5) 통장 사본
- 6) 연금 수급자는 매년 1월 말까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연금, 장애연금일시금 신청서류)

장애급여 청구시 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1) 급여(연금) 지급신청서
- 2) 장애 퇴직증명서(노회장 또는 기관장 발행)
- 3) 장애진단서(장애등급 기입)
- 4) 소속 노회장의 의견서, 단 본인이 파장애인일 경우 동일 노회 소속의 부노회장(목사, 장로)의 의견서

제24조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위로금 신청서류)

유족급여 청구 시 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1) 급여(연금) 지급 신청서
- 2) 사망진단서 (병원 발행)
- 3) 혼인관계증명서(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 (급여의 결정)

1. 이사회는 급여(연금)지급 신청서의 접수사항을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한다.
2.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정당 수급권자에게 급여(연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26조 (기본 급여액)

기본 급여액이란 가입자가 20년 불입 후 지급받는 급여액을 말한다.

제27조 (급여액의 산정)

1. 급여액의 산출은 당해연도의 기준 봉급액을 산정 기초로 한다.
2.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급여의 지급)

1.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 까지 지급한다.
2. 1항의 지급하여야 할 사유는 소속 교회의 은퇴 후 급여 중단과 노회의 은퇴 결의를 말한다.
3. 지급되는 월 급여는 그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4. 1항의 연금지급 대상자 중 노회 은퇴 결의가 있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연금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차적용에 따라 적용된다.

제6장 각 급여지급 사유 및 지급기준

제29조 (퇴직 환급금)

1. 연금가입 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시 지급한다.
2. 지급액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 (퇴직환급 일시금)

1. 연금가입 후 납입금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후 퇴직 시 지급한다.
2. 지급계산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액을 합

산하여 지급한다.

3. 연체이자 납입분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31조 (퇴직 일시금)

1. 정년으로 퇴직하는 분이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2. 지급계산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2조 (사망 일시금)

1. 연금가입 후 10년 미만 사망 시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2. 지급계산은 기 납입한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한다.

제33조 (환불)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의무를 이행하던 중 제8조 자격상실과 제43조 중도해약에 의한 가입탈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불금을 지급한다.

1.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 개인기여금만 지급
2. 가입기간이 3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50%
3. 가입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 납입금액의 80%
4.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 납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5. 제43조 4항 5호 중도해약의 경우 납입금액의 100%를 은퇴시 지급한다.
6. 제7조 2항 타 교단으로의 이전과, 3항 노회나 총회에서 면직 처분받을 경우는 개인기여금 원금만 지급한다.

제34조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지불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가 연금가입 후 2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연금을 지불한다. 퇴직연금의 산정은 재직기간의 매 1년에 대하여 기준봉급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다음의 경우는 퇴직 연금 일시금을 지급한다.
 - 1) 연금 가입 후 20년 이상 재직하고 55세 미만으로 퇴직할 경우
 - 2)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원하는 경우

- 3) 퇴직 연금 일시금의 계산은 제31조의 퇴직일시금 지불 원칙에 준용한다.
3. 연금 가입 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기준 봉급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 1) 연금 가입 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 공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퇴직 공제 일시금의 계산은 일시금 지불 원칙에 준한다.
4. 199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퇴직 시까지 연금을 납입하여도 20년을 납부할 수 없는 가입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자격
1994년 1월 1일 이후 연금에 가입하고 15년 이상 연금을 납입한 교역자
 - 2) 재직기간의 산정기준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15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 연금을 지불한다.
 - 3) 지급금액의 산정기준
퇴직연금의 산정은 재직기간의 매 1년에 대하여 기준 봉급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금 연차적용)

1. 연금지급은 은퇴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연차적용하여 승급 없이 고정 지급한다.
2. 연금수급 개시 연령별 연차적용표(3%씩 감액)

퇴직연령	퇴직연금 연차적용비율
65세	퇴직연금액의 85%
66세	퇴직연금액의 88%
67세	퇴직연금액의 91%
68세	퇴직연금액의 94%
69세	퇴직연금액의 97%
70세	퇴직연금액의 100%

제36조 (연금 장기수급자 연차적용)

1. 연금 장기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을 연차적용하여 지급한다. 연차적용은 최초 연금지급일로 부터 11년차 부터 15년까지 수령금액의 10% 감액하고 16년

차 부터 5% 추가 감액하여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2. 연금 장기수급자 연차 적용표

퇴직연령	퇴직후 10년까지	퇴직후 15년까지	퇴직후 16년이상
65세	퇴직연금액의 85%	퇴직연금액의 75%	퇴직연금액의 70%
66세	퇴직연금액의 88%	퇴직연금액의 78%	퇴직연금액의 73%
67세	퇴직연금액의 91%	퇴직연금액의 81%	퇴직연금액의 76%
68세	퇴직연금액의 94%	퇴직연금액의 84%	퇴직연금액의 79%
69세	퇴직연금액의 97%	퇴직연금액의 87%	퇴직연금액의 82%
70세	퇴직연금액의 100%	퇴직연금액의 90%	퇴직연금액의 85%

제37조 (급여의 제한)

1. 연금수급자가 은퇴 후 다시 유급교역자로 봉직할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은퇴 후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기간은 총회가 정한 만 70세 정년까지로 한다.
2. 연금수급권자가 소속한 노회와 총회에서 치리회의 최종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며, 환불 처리한다.
3.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는 환불 처리한다.
4. 환불금 지급계산은 연금으로 납부한 총 납부액과 연금 급여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상계하여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에 이사회서 정한 이율을 합산하여 환불 처리한다.

제38조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불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시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 장애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제23조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장애등급 기준
 - 1) 장애등급 기준은 부칙 제44조의 장애등급표에 의한다.
 - 2) 1)항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3) 기타 이사회에서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장애를 인정한 경우
4. 장애연금의 계산

- 1)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액
- 2) 10년 이상 재직자는 기준봉급액의 100분의 3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 3) 10년 미만 재직자는 제30조에 준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39조 (유족연금)

1. 퇴직연금 수익자가 사망 후 정당 유족 생존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정당 유족 지급순서
 - 1) 사망자의 배우자 (단, 지급 시점 이후 재혼의 경우 제외)
 - 2) 사망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지급 시점 출생 및 입양한 자녀 제외)
 - 3) 사망자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
3. 지급기준은 지급사유 발생 시 정당 유족 생존 시 매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한다.
4. 연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납입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 의사결정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제34조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하며, 일시금으로 받기 원할 때에는 제32조 사망일시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배우자 수령연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40조 (유족위로금)

1. 다음의 경우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 2) 연금수익자가 사망하였을 때.
 - 3) 유족위로금 지급 계산은 기본급여액의 1개월분으로 한다. 단 유족연금 수익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1조 (미지급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1.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명의로 그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

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42조 (중도해약)

재직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약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청구서류
 - 1) 연금 환불 청구서
 - 2) 중도해약 사유서
 - 3) 노회장(또는 기관장) 확인서
2. 중도해약 환불금 규정은 제34조 환불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중도해약 환불금 지급은 이사회의 심의 승인 후 지급해야 한다.
4. 중도해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전도사준목목사직을 사임하였을 때
 - 2) 해외로 이주하였을 때
 - 3) 타 교단으로 이관하였을 때
 - 4) 총회 처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직원이 사직하였을 때
 - 5) 1~4항 외 중도해약신청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은퇴시 지급한다.

제43조 (대출)

연금가입자가 교역(실무)에 시무하고 있는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청구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1. 대여할 수 있는 자금
 - 1) 자녀의 장학금
 - 2) 신병 치료를 위한 비용
 - 3) 기타 가정 형편상 소요되는 비용
2. 대여기간 : 1년~3년
3. 대여금액 :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40% 한도 내
4. 대여이율 : 당시 은행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이율

5. 이자 계산방법

- 1)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도 불구하고 365를 나누어 산출한다.
- 2) 이자 계산단위는 10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6. 상환방법

매 1년 마다 이자 불입, 만기 도달 시 원리금 전액 상환(희망에 따라 분할 상환도 가함)

7. 연체이자

- 1) 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 달부터 입금 당일까지 연체이자 4%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 2) 대출기간 만기 후 1년 이상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납입금을 대출금의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상계할 납입금은 최종 납입한 연금 납입금부터 처리하며 상계된 금액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2)항에 근거 상계처리하여도 납입금보다 채권액이 많을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이사회 결의로 결손처리 할 수 있다.

8. 기간연장

연체 없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기간연장 시에는 대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9. 제출 서류

- 1) 대여 신청서
- 2) 인감 증명서
- 3) 보증서(교회 재정부장, 기관 경리 책임자, 부담금까지 대출 시 첨부)
- 4) 확인서(노회장, 기관장, 부담금까지 대출 시 첨부)

제7장 장애연금 등급기준 및 특약가입 약관

제44조 (장애등급표)

1. 1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4) 두 팔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5) 두 다리 발목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6) 위의 1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항상 개호를 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7)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2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로 감퇴된 자
- 2)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3) 씹기 또는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를 입은 자
- 5) 한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6) 한 다리의 발목 관절 이상을 잃은 자
-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잃었거나 전혀 쓸 수 없게 장애를 입은 자
- 10) 양쪽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 11) 위의 1 내지 10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2) 정신에 시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신경계통에 시무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3. 3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접하여 큰 소리로 말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3) 씹기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 4) 척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입은 자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게 된 자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게 된 자
- 7) 한 손의 엄지와 시지를 잃은 자이거나 엄지와 시지를 합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자
- 8) 한 손의 엄지와 시지를 합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 9) 한발의 리수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 10) 양쪽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는 자
- 11) 위의 1에서 10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2) 정신 또는 신경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기능과 정신 신경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5조 (특약가입)

연금가입자의 퇴직 후 연금수급액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추가납입계약 제도(이하 '특약'이라 함)를 신설하고 다음의 약관에 의하여 특약의 가입을 권장한다.

〈특별연금 추가납입 약관〉

1. 특약의 가입 및 절차와 계약의 소멸

- 1) 특약은 총회 연금가입자(이하 ‘주 계약’)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특약연금은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는 불입할 수 없다.
- 2) 특약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약정서에 서명하면 연금재단이사회가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 3) 주 계약 연금의 중도해약이나 퇴직, 사망 등의 지급 규정에 의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특약 조건도 함께 소멸된다.

2. 특약의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 1) 특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2)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자의 원에 의하여 매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3) 특약납입기간은 최장 12년까지로 제한한다.

3. 기준 봉급액 산정, 계약 및 납입액

- 1) 기준 봉급액은 운영세칙 제15조(기준 봉급액)에 의하며, 특약의 계약은 반드시 주 계약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주 계약의 기준 봉급액에 의한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 2) 특약의 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 (1) 3단계는, 주 계약자가 기본단계(주 계약 2단계)의 50%를 추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 2년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4단계는, 주 계약자가 기본단계(주 계약 2단계)의 100%를 추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 2년 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분	단계	불입금액
특약	3(0.5)	기준봉급액 기준의 당해연도 불입금의 50% 추가 납입
	4(1.0)	기준봉급액 기준의 당해연도 불입금의 100% 추가 납입

3) 특약조건의 부담금은 가입자와 소속 교회(기관)의 형편에 의한다.

4. 특약에 의한 납입금 환불

-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중단되며, 납입금을 환불한다.
 - (1) 운영세칙 제7조(자격의상실)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자
 - (2) 특약 납입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 (3) 주 계약을 중도 해약한 자
 - (4) 주 계약 규정(세칙 제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9조)에 의거 퇴직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환급일시금을 수급하였거나 치리에 의해 제명(면직)되어 환불 처리된 자
- 2) 특약이 해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1) 청구서류 : 특약환불신청서
 - (2) 환불액 : 납입금액의 90%
 - (3) 위약금 : 납입금액의 10%

5. 특약연금 청구 및 구비서류

운영세칙 제34조(퇴직연금)에 의거 퇴직연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특약연금도 함께 신청되는 것으로 같으며, 구비서류는 운영세칙 제22조(급여의 신청)에 의한다.

6. 특약연금 산정 및 지급

- 1) 특약연금의 산정은 운영세칙 제34조(퇴직연금) 제1항에 의거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의 기준 봉급액으로 산정한다.
- 2) 특약연금은 납입기간 1년당 3%를 지급한다
- 3) 특약연금은 퇴직연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7. 특약분의 일시금 지급, 재가입의 제한

- 1) 퇴직자가 특약분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세칙 제31조(퇴직일시금) 규정에 의한다.
- 2) 퇴직자가 20년 재직 후 연금수령을 퇴직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약연금도 당연히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3) 특약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4항 제2호의 기준에 의거 환불하며, 특약계

약의 해지 후 재가입은 해약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8장 개정 절차

제46조 (개정)

이 운영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연금 관계 서류는 소정 양식과 같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2년 9월 제67회 총회 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재단 설립 및 정관 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제109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